

「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」FAQ

1. 언제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?

-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(www.work.go.kr/youthjob)
 - 기업의 참여 신청은 7.30.(목) 10시부터 가능

2. 지원대상 기업 요건은 무엇인가요?

- 기본 대상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해당됨
 - 이때, 5인 이상 산정 기준은 참여 신청일 전월 말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기준이 됨
 - 예외적으로 ①지식서비스산업, ②문화콘텐츠산업, ③신·재생에너지 산업, ④성장유망업종(전·후방산업), ⑤벤처기업, ⑥청년창업기업(대표자 39세 이하, 창업 7년 이내)은 1~4인 기업도 참여 가능
 - 중소기업은 「고용보험법」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가능하고, 중견기업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상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가능
- 다만, 다음 기관이나 기업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한됨
 - 정부·공공기관(지방공기업 포함)·학교
 - 소비향락업,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공급업체
 - 임금체불 명단공표, 중대재해 등 발생 명단공표 기업
 - 또한, 참여신청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시까지 인위적 감원*한 기업의 경우도 지원이 제한됨

*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

3. 기업은 지원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
- 해당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운영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요건을 확인함
 - 운영기관 목록은 홈페이지(www.work.go.kr/youthjob)를 통해 확인 가능

4. 기업이 어떤 청년을 채용하면 되나요?

- 만 15~34세의 청년을 채용해야 하고, 군필자의 경우 군 의무복무 기간만큼 연장된 연령을 적용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함
 - 다만, **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**(졸업예정자*는 가능), 취업 중인 자(고용보험 가입자, 사업자등록자 등), 동일기업 재취업자(6개월내)는 **지원 대상에서 제외됨**
 - * (졸업예정자) 고등학교 3학년 출석일수 이수자,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일수 2/3 출석 이후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'현장실습 선도기업'에 취업한 자, 대학교 졸업예정자
- 기업은 운영기관이 채용계획서를 승인한 후 이에 따라 청년을 '20.12월말까지 채용해야 함

5.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면,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인가요?

- IT 관련 직무란 기업 내 아날로그 문서·기록물을 전산화하거나(기록물 정보화형), 기업의 홈페이지·SNS 등 온라인 콘텐츠를 관리하거나(콘텐츠 기획형), 인공지능·빅데이터와 관련된 직무(빅데이터 활용형) 등을 의미함
 - 구체적인 직무 유형 및 예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(www.work.go.kr/youthjob)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임

6. 기업은 청년과 어떤 조건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해야 하나요?

- 3개월 이상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며, 정규직 채용시에도 지원 받을 수 있음
 - 또한, 주 15시간 이상 근무, 최저임금* 이상 지급해야 하고, 4대 보험(고용보험, 산재보험, 건강보험, 국민연금)에 가입해야 함
- * ('20년) 주 40시간 기준 월 179만 5,310원

7. 지원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?

- 지원 인원은 참여신청 전월말 기준 기업 근로자(고용보험 피보험자) 수 이내, 최대 30명까지 가능함
 - * 예를 들어,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 당시,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,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
- 단,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특별한 필요가 있을 시 운영기관의 별도 검토·승인을 거쳐 2배까지 한도 확대 가능
 - * ▲채용 필요성 ▲직무내용 ▲예상 결과물 ▲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·승인 후 채용
 - ** 예. 10인 기업: 기본 지원한도 최대 10명 → 별도 승인시 20명
50인 기업: 기본 지원한도 최대 30명 → 별도 승인시 60명
3인 기업: 기본 지원한도 3명 → 별도 승인 시 6명
- 또한, 사전에 제출한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한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해당 직무에 청년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지원기간 6개월에서 기 지원기간을 제외한 잔여 개월 수 만큼 지원됨
 - 예를 들어 1개월 15일을 지원받은 후, 해당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잔여 4개월만큼 지원받을 수 있음

8. 얼마를 지원받나요?

- 청년에게 지급한 임금수준의 90%를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하며,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음

< 지급 예시 >

월 보수 총액	인건비	간접노무비
200만원 이상	180만원	10만원
200만원 미만	지급 임금의 90%	10만원

- 지원 기간은 `20년말까지 채용한 인원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

9.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?

-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음

10.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-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음
 - ①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서 제출 및 승인
 - ② 기업과 운영기관간 지원 협약 체결
 - ③ 기업은 청년을 채용, 명단을 운영기관에 통보
 - ④ 기업은 임금 지급 후 매월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
 - ⑤ 지원금 지급

11. 채용계획서 제출은 어디에 하면 되나요?

-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(www.work.go.kr/youthjob) 상단 메뉴에서 “운영기관 조회”를 선택 후, 관할 지역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참여 신청하면 됨

12. 신청 기한이 있나요?

- 기업은 채용계획서 승인 후 `20년말까지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하고, 운영기관에 명단을 통보해야 함
 -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, 최대 청년 채용 후 9개월차(첫달 포함) 말일까지 신청 가능
 - 예컨대 `20.12.15에 채용시 `21.8.31까지 신청할 수 있음

13. 특화 분야란 무엇인가요?

- 특화분야란 각 부처에서 추천한 특정 기관·협회·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분야로서 `20.5.20. 「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」(경제중대본회의) 등을 통해 발표한 바 있음
 - 지원 내용, 절차 등은 같으나, 대체로 지원 대상을 특정 산업 또는 직무 등으로 한정하여 지원할 계획
 - 분야별 내용은 특화분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
 - * 홈페이지에 게시된 운영기관 연락처 참고

14. 하나의 운영기관으로부터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- 원칙적으로 기업은 하나의 운영기관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으나,
 - 운영기관의 지원 인원이 부족한 경우, 특화 운영기관과 일반 운영기관의 지원이 모두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

15. 사업 참여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나요?

- **참여 신청 단계**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, 기업의 참여자격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함
 - * 증견기업의 경우 증견기업 확인서 (우선지원대상기업은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)
 - * (1~4인 기업의 경우)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서,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연령 및 사업 개시연월일 관련 증빙서류 등
- 추후 청년을 채용하여 채용자 명단 통보단계에서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,
- 지원금 신청 단계에는 임금 지급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함
- 자세한 내용은 운영기관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음

16. 운영기관이 청년 디지털, 일경험 두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모두 참여할 수 있나요?

- 가능하며, 각각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
구 분	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	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
채용 대상 청년	대학 재학생 불가 (단, 졸업예정자는 가능)	대학 재학생 가능
참여 청년 직무	사업 유형에 부합하는 IT직무만 가능 * 채용계획에 대한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	직무 제한 없음
근로계약 유형	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* 정규직 채용 또는 전환 가능	일정 기간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
지원금액	인건비 최대 180만원 (지급 임금의 90%)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	인건비 최대 80만원* (근로시간 비례) 및 관리비 10% 지원 * 30시간 이상 80만원, 20시간 이상 60만원, 15시간 이상 40만원
지원인원 한도	참여신청 전월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%(30명 한도) * 운영기관 승인을 거쳐 한도 확대 가능	참여신청 전월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20%(30명 한도)
교육	별도 교육 의무 없음	멘토 지정, 자체 업무 지도 · 교육 실시 내역을 매월 지원금 지급시 제출